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원에 별도 비치된 이용계약서에 의하고, 센터이용비용은 노인복지 관계 법령 및 노인장기요양 관계 법령 등에 의한다.

1) 계약의 목적

가. 센터와 이용자(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개정 2021.08.19>

나.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신설 2021.08.19>

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신설 2021.08.19>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라.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08.19>

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신설 2021.08.19>

2) 계약기간

가. 제7조 항에 의한 사항으로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변경 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신설

2021.08.19>

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신설 2021.08.19>

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신설 2021.08.19>

마.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신설 2021.08.19>

-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③ 비급여 비용 등

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8.19>

3) 계약의 변경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갑(병)”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19>

-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나. 급여비용 등의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08.19>

-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또는 비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을 경우 비용 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 기간은 이용일로부터 공단 등급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08.19>

라.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이의가 없으면 계약은 등급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신설 2021.08.19>

마.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급여 비용 변경은 비급여 비용 변경계약을 작성

한다. <신설 2021.08.19>

4) 이용비용

가.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급여)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의 본인부담금 비용에 따른다. <신설 2021.08.19>

나.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1.08.19>

다. 비용의 부담 <개정 2021.08.19>

① 본인 일부 부담금(급여비용)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비용규정을 준수한다.

② 그 외 식재료비, 개인 소모품구입비, 의료비 등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라. 비급여 대상 <개정 2021.08.19>

①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센터에서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이용자가 납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비급여대상 항목의 비용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마.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바.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1.08.19>

① 이용센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이용센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센터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고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까지를 의미한다.

③ 이용센터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④ 위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이용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의 비용(본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본 원의 비급여 비용은 물가상승 등의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

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외박의 경우, 외박 첫 일자부터 10일간은 본인부담금의 50%를 납부한다.

사. 직원의 가족, 또는 법인 내의 재가 대상자에 한하여 비급여 내에서 할인이 가능하다.

5) 비용의 수납

- 이용비용은 월 후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현금 수납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한다.
- 단, 현금으로 수납된 비용은 센터에서 익일까지 금융기관에 입금 조치를 원칙으로 하나,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익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가.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자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라.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이용자의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센터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